

2025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(지역대표공연예술제) 공모

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「2025년 서울예술축제」 지원사업의 공모를 시행합니다.

□ 공모개요

- 공모명: 2025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
- 접수기간: 2024.12.2.(월) ~ 12.20.(금) 18:00 까지
- 제출방법: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scas.kr)
- 문의처: seoulfestival@sfac.or.kr
- 지원내용: 축제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

□ 전년 대비 주요 개선 및 변경사항 ※ 지원금 집행 세부기준은 선정 단체 대상 안내 예정

내용	2024년	2025년	비고
이행(지급)보증보험 가입	필수	폐지	
자부담 10% 의무편성	필수	폐지	
비교견적서 제출	100만원 이상 지출 건	폐지	2,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조달청을 통한 계약 추진
단체 대표자 사례비 ※ 세부내용은 지원신청서 5페이지 작성요령 참고	불가	허용	○ 구체적 역할 및 업무가 있을 경우 - 지원규모의 최대 5% 이하 편성 - 지원 심의 시 예산계획 적정성 검토 예정 ※ 편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 시 해당 내역에 대한 예산계획이 필수로 검토되어야 함

□ 신청개요

※ 선정축제 수는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지원규모는 총 지원금 안에서 운용할 수 있음

구분	서울대표예술축제(구 서울대표공연예술제)	서울유망예술축제(구 서울유망공연예술제)
신청분야	○ 연극·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복합 및 기타 등 - 여러 장르가 복합된 축제는 가장 주된 장르를 선택 - 주된 장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하는 축제는 복합 및 기타로 지원신청 ○ 2025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행되는 예술축제	
신청대상	○ 최근 10년간 8회 이상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○ 최근 5년간 3회 이상 서울시 대표공연 예술제 사업으로 선정된 예술축제 - 통합 전 대표공연예술제(서울시) 및 예술축제 지원사업(재단) 실적 인정	○ 최근 3년간 2회 이상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된 예술축제
지원규모	○ 최대 7억원 이하	○ 최대 1억 5천만원 이하
	- 최종 지원규모는 심의를 통해 결정	
제출서류	○ 지원신청서(지정양식) - 최근 10년간 8회 이상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 및 5년간 3회 이상 선정된 실적 포함 ○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	○ 지원신청서(지정양식) -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개최 실적 포함 ○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	1. 지원신청서는 한글파일과 PDF 형식으로 변환한 파일 총 2개 2. 지원신청서 내 URL 이 잘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(비공개인 경우 비밀번호 첨부)	
지원기간	1년(단년)	
유의사항	○ 서울예술축제 지원금으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사업 대상 사례비(공연료, 초청료 등) 지급 불가 ○ 축제 관할 자치구 안전관리 부서에 안전관리 심의 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전관리 심의를 받아야 함 ○ 자료가 미흡하거나 미제출 시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 ○ 기간 내 서류제출을 완료하지 않았을 시 심의에서 배제함(제출마감시간 엄수) ○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○ 지원신청자격 및 부적격자·사업에 대한 내용 숙지 후 지원사업 신청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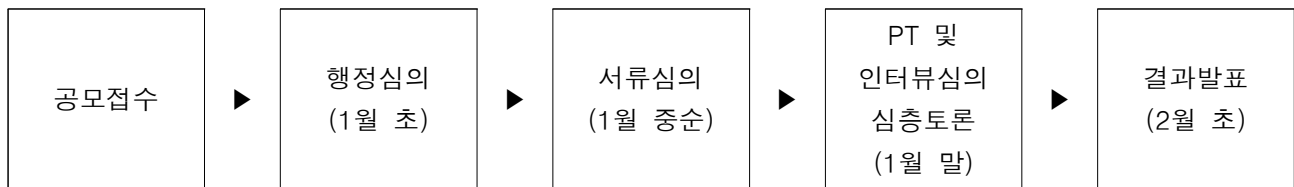
○ 공통 신청자격 및 기타

- 연극·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복합 및 기타 등 25년 2월~12월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
- 축제를 주최하는 단체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
- 지원제외 대상

- ① 신청자가 국·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, 학교 및 소속단체, 초·중·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,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인 경우
 - ② 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종교행사, 생활예술, 소규모 개인공연, 일회성 단체공연(행사성 축제), 종합 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, 아마추어 및 학생 주도의 축제 등
 - ③ 동일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※ 예: '25년 공연예술 창작주체(한국문화예술위원회)로 선정되거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등 축제지원 사업과 동시 선정 불가(중복 선정 시 택일)
- ④ 기타 [별첨 2. 지원신청부적격요건]의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

□ 선정절차

○ 인터뷰(PT 심의)는 '서울대표예술축제' 만 추진함



□ 심의기준 ※ 세부내용은 지원신청서 확인

구분	배점	내용
계획의 적절성	40	○ 사업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 및 충실성 ○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○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
계획의 실현 가능성	30	○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○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,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
결과의 파급효과	30	○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○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○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 체계의 효과성

□ 향후일정 ※ 아래의 일정은 접수현황 및 심의대상 건수 확인, 기타 상황 등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추진 내용	일정
사업설명회	2024년 12월 6일(금) 10:30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5층 다목적공간
서류심의 발표(예정)	2025년 1월 중순
인터뷰 심의(예정)	2025년 1월 21일(화) ~ 23일(목) 중 예정 ※ 접수건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
최종 선정결과 발표(예정)	2025년 2월 초

□ 문의처

- 사업문의: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1팀 seoulfestival@sfac.or.kr / 02)3290-7461, 7485
-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: 02-3290-7466, 7467

[별첨 1] 지원사업 단계별 유의사항

지원 신청 시	○ 지원신청 필수 서류(지정양식 필수) 미제출/미사용 시 심의 제외 ○ 지원신청 시 제시하는 아래 내용 동의 및 서약 필수(지정양식) - 지원신청자의 ‘개인정보 수집·이동 동의서’ -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을 위한 ‘성희롱·성폭력 예방실천 관련 서약’ - 지원자 책임 신청제 등 ‘지원신청자 확인 내용’ 등 ○ 동일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심의 및 결과발표 시	○ 부적격 기준 또는 지원 신청 사업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 주체 및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○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○ 심의 결과발표 시 점수, 개별 심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
지원사업 선정 후	○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과도하게 변경/축소되는 경우 변경 조치 기준에 따라 지원금 취소/삭감될 수 있음. 사업계획 작성 시 반드시 실현가능성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 ○ 지원금 교부사업 내에서 문화예술용역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.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일 경우 가입 관리 이행 필수
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(SCAS) 사용 시	○ 지원, 교부, 정산 및 성과보고 등 사업의 전 단계에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(SCAS) 사용 -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(SCAS)의 입력 정보를 기준으로 향후 모든 지원 관련 사항(선정 이후 관리 안내 등 포함)을 안내함에 따라 지원신청서 외 ‘마이페이지-회원정보’의 개인정보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필수 ※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- 지원신청 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(SCAS) 내 사업 분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마감시간 이후 변경 불가 -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(SCAS)과 지원신청서 내 작성된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(SCAS)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음

[별첨 2] 지원신청 부적격 요건

불공정 행위 등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	○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예술인(단체) 중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(검토위원회)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○ 표절,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범죄 사실의 공식적 인정 또는 형 집행 중인 예술인(단체) ※ 범죄사실의 공식적 인정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(기소유예, 선고유예, 집행유예, 형 선고 등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) 또는 그 외 제재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률위반을 인정한 경우 ○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예술인(단체) ○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예술인(단체) ○ 상기 부적격 요건 중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 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
성희롱, 성폭력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	○ 성희롱, 성폭력 등과 관련한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 또는 형 집행 중인 경우 ※ 범죄사실의 공식적 인정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(기소유예, 선고유예, 집행유예, 형 선고 등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) 또는 그 외 제재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률위반을 인정한 경우 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예술인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○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6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예술인(단체) ○ 성희롱,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예술인(단체) 중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(검토위원회 등)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○ 성희롱,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(검토위원회 등)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○ 상기 부적격 요건 중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
지원신청 ‘주체’ 기준 부적격 기준	○ 개인 신청 불가 ○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단체 ○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·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○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○ 교육, 종교 활동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교·종교기관 등 또는 이들 기관의 소속·운영단체
과거 선정이력 및 사업 수행 관련 부적격 기준	○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예술인(단체) ○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예술인(단체) - 정산·성과보고 지연제출/미제출/미완료, 임의포기, 환수 대상자 등 ※ 기존 선정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제한 등 제재 기한, 제재 방식 등이 상이하므

	로 반드시 지원신청 전 관련 부서에 사전 확인 후 신청 ※ 기존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사업 종료 후 기한 내 정산·성과보고 진행 중인 예술인(단체)은 기존 사업 정산·성과보고 승인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※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
지원 부적격 사업 기준	○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창작활동 및 작품제작 ○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○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○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 ○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, 국고,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※ 타 기관 중복사업 선정 시 선정자는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※ 단,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등)

[별첨 3] 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

※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,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환수조치

항목		용도	집행증빙방법						
회계검증수수료 (필수편성) ※ 2024년 기준으로 2025년 변경될 수 있음		지원금 집행 내역 회계검증수수료 ※ 세부 예상금액 [별첨4] 및 지원 신청서 참고	① 이체확인증 ② 전자세금계산서						
인건비	본인 사례비	단체 대표자가 명확히 축제에서 역할이 있을 경우 (개·폐막 기획·연출 등) － 지원규모의 최대 5%이하 편성 － 지원 심의 시 예산계획 적정성 검토 예정 ※ 편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 시 해당 내역에 대한 예산계획이 필수로 검토되어야 함	① 이체확인증 ※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(SCAS)에서 사례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약 필수 ※ 본인사례비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불가						
	기간제 근로자	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을 위해 고용된 인력(1년 미만 기간제, 4대보험 필수) ※ 법정최저임금 이상 준수, 근로기준법 등 준수 필수 ※ 1년 이상 채용인력은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	① 이체확인증 ② 월별 근로소득세 영수증(국세/지방세) ③ 4대보험 납부확인서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④ 근로계약서 ⑤ 급여명세서						
	아르바이트 (일용직) 및 보조인력	1개월 이내 단기인력 / 1일 8시간 이내 지급 (법정최저임금 이상 준수, 근로기준법 등 준수 필수)	① 이체확인증 ②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(고용, 산재보험) ③ 근로계약서						
	개인 사례비	출연, 기획, 연출, 평론 등 개인 사례비	① 계약서 ② 이체확인증 ※ 원천세 및 고용보험료는 따로 항목 등록						
	원천세	사례비에 대한 원천세(사업/기타)	① 이체확인증 ② 원천세 납부영수증(국세/지방세)						
	복리 후생비	예술인 고용보험료	① 이체확인증 ② 보험료 완납증명 ③ 개인별 혹은 월별 부과지 보험료 조회						
일반 수용비	홍보비	홍보물 제작, 디자인, 온·오프라인 홍보 등	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 colspan="2">거래 방식에 따른 증빙서류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카드</td><td>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※ 카드영수증 내 세부내역이 있을 경우 생략 가능</td></tr><tr><td>계좌이체</td><td>① 이체확인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③ 전자세금계산서/전자계산서 ※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</td></tr></tbody></table>	거래 방식에 따른 증빙서류		카드	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※ 카드영수증 내 세부내역이 있을 경우 생략 가능	계좌이체	① 이체확인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③ 전자세금계산서/전자계산서 ※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
	거래 방식에 따른 증빙서류								
	카드	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※ 카드영수증 내 세부내역이 있을 경우 생략 가능							
	계좌이체	① 이체확인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③ 전자세금계산서/전자계산서 ※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							
제작비	무대, 세트, 영상, 음악, 소품, 의상 등 제작								
기타 운영비	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								
재료비·용역비	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								
여비	국내여비	행사를 위한 초청팀 대상 숙박비, 교통비 ※ 별도 여비 규정 준수 필수	※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※ 한 업체를 통한 분리발주 금지 ※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 불가함에 따라 과도한 예산 지출 예상 시 별도 재단 협의 필요 ※ 무대, 음향, 조명, 특수효과 등에 대한 실제 설치내역 과 견적서 비교 대조할 수 있고 필요 시 지출 증빙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						
	국외여비	행사를 위한 해외 초청팀 대상 항공료 ※ 별도 여비 규정 준수 필수							
공공요금 및 제세		상해보험료, 행사안전보험, 우편료 등 ※ 행사안전 관련 보험 가입 필수							
임차료		장비 및 소품 등 임차료							

[별첨 4] 회계검증수수료 기준, 여비정액지급기준표

□ 2024년 회계검증수수료 기준

※ 2025년 변경가능성 있으며 지원결정 시 해당 금액 반영하여 재편성

지원결정액 기준(이상/미만)	부가가치세 포함
1천5백만원 ~ 3천만원	302,000원
3천만원 ~ 4천만원	360,000원
4천만원 ~ 5천만원	390,000원
5천만원 ~ 6천만원	541,000원
6천만원 ~ 7천만원	586,000원
7천만원 ~ 8천만원	631,000원
8천만원 ~ 9천만원	676,000원
9천만원 ~ 1억원 미만	722,000원
1억원 ~ 2억원	908,000원
2억원 ~ 3억원	957,000원
3억원 ~ 4억원	988,000원
4억원 ~ 5억원	1,032,000원
5억원 ~ 6억원	1,181,000원
6억원 ~ 7억원	1,240,000원

□ 여비정액지급기준표

- 서울 외 소재단체가 초청대상일 경우 지원금 집행 가능
- 초청 대상이 외국 단체일 경우 항공료 집행 가능

철도임	선박임	항공임	숙박비
일반석	일반석	실비 (이코노미)	100,000원(서울특별시)